



제 3 4 0 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23. 06. 19.(월)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의안번호	274
제안일자	2023. 05. 31.
회부일자	2023. 06. 02.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

#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1. 제 안 자 : 임기진 의원 외 12명

### 2. 제안이유

- 경상북도 내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택예방접종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로타바이러스 감염증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종류 일부를 삭제하고자 함.
- 선택예방접종의 대상자, 접종 기록 등 효율적 관리업무를 위하여 예방접종 기록의 전산 등록 및 관리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필수예방접종)를 반영하여 선택예방접종 종류 및 지원대상을 수정함(안 제2조, 안 제3조).
- 예방접종 기록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

### 4. 관련부서 협의

- 규제심사 :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법무혁신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 부패유발요인 없음(감사관)

## 5. 입법예고 결과

- 예고방법 : 경상북도의회 홈페이지 공고
- 예고기간 : 2023.06.02. ~ 06.12.(경상북도 공고 제2023-58호)
- 의견제출 : 없음

## 6. 검토의견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23년 6월 29일부터 로타바이러스<sup>1)</sup>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포함되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 □ 주요내용

- 안 제2조와 안 제3조는 선택예방접종 대상 질병에서 '로타바이러스'를 삭제하였습니다.
  - 이는 로타바이러스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포함됨에 따라 선택예방접종 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안 제7조는 도지사가 선택예방접종 정보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입력을 도내 보건소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

1) 구토와 발열, 물설사, 탈수증, 장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 전 세계 영유아에서 발생하는 위장관염의 가장 흔한 원인 바이러스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선택예방접종 기록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종합의견

- 「경상북도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19년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의 선택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영아와 노인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 상위법령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23년 6월 29일부터 로타바이러스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에 포함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은 로타바이러스를 선택예방접종 대상 질병에서 삭제하고 선택예방접종 기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